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5일

발 의 자 : 박순규, 장상기, 전병주, 홍성룡,
노승재, 김상훈, 양민규, 최기찬,
박기열, 성흠제, 채유미, 김재형,
권영희, 이정인, 문장길, 이광호,
이동현, 강대호, 송정빈, 서윤기,
김생환, 송명화, 송아량, 김경우,
김제리, 전석기, 황인구, 김 경,
강동길, 장인홍, 김종무, 김희걸
의원(32명)

1. 제안이유

- 의원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이 맡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 조문상으로는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관련 자구 등을 정비해 표창 제도와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표창대상자와 추천자를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를 “추천한”으로,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로, “조사한 후”를 “조사하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p> <p>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p> <p>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대상자의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p>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 ----- ----- -----</p> <p>1. ----- ----- 추천한 ----- ----- -----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p> <p>2.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p>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 ⑥ (생략)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생략)

② 제1항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자 명부) 표창권자는 표창수상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로 구성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4호 서식-----

--.

③ -----
----- 경우 -----

조사하고-----
----- 제2항에 따른 -----
-----.

제14조(수상자 명부) -----
----- 별지 제5호 서식-----

-----.